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가톨릭세계관 및 예수회교육 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0.20., 1984.11.10., 1989.5.13>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이하“법인”이라한다)라 한다.<개정 1981.10.20.>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개정 1981.10.20.>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의 1호에 둔다.<개정 1981.10.20.>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장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10.20., 1991.4.15., 2006.1.16., 2008.2.18., 2012.9.1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개정 1981.10.20., 2008.2.18.>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81.10.20., 1984.11.10., 1995.3.2., 2006.1.16.>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부금과 수
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서 이에 충당한다.<개정 1981.10.20., 1991.4.1
5.. 2006.1.16.>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
다)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회계는 서강대학교 총장(이하 '총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개정 1981.10.20., 2006.1.16.>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
0.20., 1983.10.29., 1986.9.22., 1991.4.15., 2006.1.16., 2008.2.18.>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
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
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1981.10.20.>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81.10.20.>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 13 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제 14 조 (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② (삭제)

제 15 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 16 조 (회의) (삭제)

제 17 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삭제)

② (삭제)

제 18조 내지 제 21조 (삭제)<신설 1981.10.20.>,<개정1986.9.22., 1991.4.15.>,
<삭제 2007.5.14>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81.10.20., 1985.1.17., 1997.12.5., 1999.10.12., 2001.1.5., 2002.5.8., 2003.9.2., 2007.5.14.>

이사 12명 (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명

제 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대학의 총장인 이사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개정 1981.10.20., 1984.11.10.>

④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07.5.14.>

제 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삭제<2008.2.18.>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장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0.20., 1991.4.15., 2006.1.16.>

⑤ 삭제 <신설 2007.5.14.>,<개정 2008.2.18.>

제 24조의 2(임원 및 개방이사의 자격) 이사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7.5.14.>,<개정 2008.2.18.>

1. 천주교 사제로 서품된 지 5년 이상인 자, 또는 수도자로서 종신서원을 한 지 5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구장 또는 소속 수도회의 장의 지명을 받은 자.

2.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이사로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한 자.

제24조의3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이사 중 3인 (이하 '개방이사'라고 한다)과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7.5.14.>,<개정 2008.2.18.>

②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의2의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그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 배수로 추천하고, 감사의 경우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동안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제24조의4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서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위원회 추천 위원 4인
2. 이사회 추천 위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18.>

제24조의5 (이사 및 감사 대상자 추천 절차방법) ① 추천위원회가 이사 및 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하는 절차 및 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다. <신설 2007.5.14.>,<개정 2008.2.18.>

1.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서 접수
2. 회의 개최 및 의결
3. 이사 및 감사 추천 대상자 결정(이사-2배수, 감사-1배수)
4. 학교법인 이사회로 추천서 발송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를, 감사의 경우는 1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 추천 공문 1부.
2. 추천사유서 1부.
3.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이력서) 1부

4. 평의원회의 회의록 1부.

③ 평의회가 이사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순위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임원 등 선임의 제한) ① 이사 및 감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 1 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라야 하며,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삭제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 1984.11.10., 1986.9.22., 1991.4.15., 1999.10.12., 2000.6.17., 2008.2.18.>

제 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회는 호선으로 예수회원인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서강대학교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개정 1981.10.20., 1991.4.15., 2006.1.16., 2013.5.20.>

제 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1981.10.20.,1998.3.1., 1999.10.12.>

제 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81.10.20., 1999.10.12.>

제 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기타 이사장이 법인 및 대학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규정위반 여부의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는 일
- ② 감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81.10.20., 1991.4.15., 2010.11.1.>

제 30조 (임원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서강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2008.2.18.>

제 30조의2 (임원의 보수)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상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한다.

1. 이사장
2. 상임이사
3. 수익사업체 관리 임원

② 제1항의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6.1.16.>

제 2 절 이 사 회

제 31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총장 및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정관의 해석 및 기타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결정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81.10.20., 1984.11.10., 1986.9.22., 1991.4.15.>

제 32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소정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1.10.20., 2007.5.14.>

제 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총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개정 1981.10.20.>

제 34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개정 1981.10.20.>

제 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0.20., 1991.4.15., 2006.1.16., 2007.5.14.>

35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법인서강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5.14.>,<개정 2008.2.18.>

제 4 장 수익사업

제 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신설 1992.8.10.>,<개정 1994.11.25., 2008.2.18., 2010.11.01., 2011.5.30., 2013.5.20.>

1. 부동산 임대업
2. 서비스 광고업
3. 외국어 교육 및 교재개발사업
4. 태양광 발전소 및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
5.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6. 학원 설립 및 운영 교재 개발 언어교습 및 연구활동, 서적출판업, 통신사업, 영어학원 프랜차이즈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7. 식품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각 도소매업의 전자 상거래업, 온라인 도소매업 등
8. 초임계장비, 가공식품, 생활용품, 기념품, 기술용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신설 1992.8.10>,<개정 1996.1.18., 2006.1.16., 2009.10.9., 2011.5.30., 2012.9.10., 2013.5.20., 2013.10.11.>

1. 광고사업
2. SLP (Sogang Language Program) 사업
3. 서강빌딩
4. 서강레지덴시아
5. 주식회사 서강에너지
6. 가온 & 다운
7. 주식회사 이로컴퍼니
8. (주) 서강교육그룹
9. 유통사업
10. 일산오피스텔
11. 용인아파트
12. 서강라이프케어

제 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2.8.10.>,<개정 1994.11.25., 1996.1.18., 2006.1.16., 2008.2.18., 2009.10.9.,

2011.5.30., 2012.9.10., 2013.5.20., 2013.10.11.>

1. 광고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 SLP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학교법인 서강대학교)
3. 서강빌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학교법인 서강대학교)(사업장소재지 : 마포구 신수동 1-3)
4. 서강레지덴시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사업장소재지 : 마포구 신수동 81-136)
5. 주식회사 서강에너지 : 경상북도 문경시 의곡리 349-1번지외, 영순면 오룡리 514-1 외
6. 가온 & 다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153, 31-161
7. 주식회사 이로컴퍼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4-8, 2층
8. (주)서강교육그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1-6 제영빌딩
9. 유통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10. 일산오피스텔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2 동문굿모닝힐2 204동 201호
11. 용인아파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24-8 연원마을 벽산아파트 104동 402호
12. 서강라이프케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3(신수동, 서강빌딩 3층)

제 39조 (관리인) ① 제37조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1992.8.10.>

제 5 장 해 산

제 40조 (해산) 이 법인이 제 1 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0.20., 1984.11.10., 1991.4.15., 2006.1.16.>

제 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장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천주교 단체가 고등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개정 1981.10.20., 1984.11.10., 1991.4.15., 2006.1.16.>

제 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1.10.20.>,<개정 1991.4.15., 2006.1.16.>

제6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 43 조 (교원 임용의 원칙) 교원(총장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제1조가 정하는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찬동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81.10.20., 1982.4.21., 1984.11.10., 1985.1.17., 1989.5.13., 1991.4.15., 1997.11.8., 1997.12.31., 1999.10.12., 2002.1.11., 2002.11.27., 2005.11.3., 2006.1.16.>

제 43 조의 2 (학교의 장의 임면)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06.1.16.>, <개정 2007.5.14., 2008.2.18.>

제 43 조의 3 (교원의 신규채용)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마감일 1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1.16.>

제 43 조의 4 (교원의 임면) ①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부교수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급여 :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강의 시수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6.>

제 43 조의 5 (보직관리) ① 부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 및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6.1.16.>

제 43조의6(비전임교원, 전문연구원) ① 총장은 명예 교수·객원 교수·겸임 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전문연구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전문연구원을 계약 기간 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6.1.16.>

제43조의7 (교원인사규정) ① 교원 인사에 관한 이 정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6.1.16.>, <개정 2009.10.9.>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5.10.25.>,<개정 1981.10.20., 1983.10.29., <2006.1.16., 2009.10.9.>

1. 전임교원이 연구년 휴직을 신청한 때
2. 정부기관(또는 정부산하기관)의 장이나 2급 이상의 상근 직책에 취임 하는 경우
3. 정년보장이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타 기관에 전임직으로 취임하는 경우
5. 성직자, 수도자가 휴직을 신청한 때
6. 기타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퇴직 이전에 적어도 휴직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호, 제5호,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제45조 (휴직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사립학교법 제59조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9조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사립학교법 제59조 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사립학교법 제5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사립학교법 제59조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사립학교법 제59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임기동안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3년까지로 한다.

13. 제44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14. 제44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면권자가 인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신설 1975.10.25.>,<개정 1981.10.20., 2006.1.16.>

제 46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신설 1975.10.25.>,<개정 1981.10.20., 2006.1.16.>

제 47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해 교원이 육아휴직하게 된 때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다만, 90일의 출산 휴가기간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15.>

④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은 휴직기간 중 소정의 정규 월급여(상여급 등을 포함한 연간 급여총액의 1/12)를 지급받는다.

⑤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휴직중인 교원은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75.10.25.>,<개정 1981.10.20., 2006.1.16.>

제 48 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1975.10.25.>,<개정 1981.10.20.>

제49조 (보수 및 정년)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단, 총장은 제외한다.)
- ③ 정년이 달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 1986.9.22.>

제 50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전공)가 통합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1.10.20.>,<개정 1997.12.31., 2006.1.16.>

제 50 조의 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1.4.15.>

제 50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신설 1991.4.15.>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 1991.4.15.>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임면을 제청하고자 할 때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수에 대한 심의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 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신설 1981.10.20.>,<개정 1991.4.15., 1997.11.8., 2002.5.8.>

제 53 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 1985.1.17., 1985.3.8., 1991.4.15., 1993.9.13., 2009.10.9., 2010.11.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4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1985.3.8., 1991.4.15., 2003.10.1.>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81.10.20.>

제 56 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신설 1981.10.20.>

제 57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서강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1981.10.20.>, <개정 1991.4.15.>

제 58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81.10.20.>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9 조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삭제 <개정 1981.10.20.>,<삭제 1991.4.15.>

제 60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10.11.1.>

② 삭제 <2006.1.16.>

③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4.15.>

제 61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2006.1.16.>

제 62 조 (징계의결의 기한)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2006.1.16.>,<삭제 2007.5.14.>

제 63 조 (제척사유)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2006.1.16.,2007.5.14.>,<삭제 2008.2.18.>

제 63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삭제 <신설 1991.4.15.>,<개정 2006.1.16., 2007.5.14.>,<삭제 2008.2.18.>

제 63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삭제 <신설 1991.4.15.>,<개정 2006.1.16., 2007.5.14.>,<삭제 2008.2.18.>

제 64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2006.1.16.>,<삭제 2007.5.14.>

제 65 조 (징계의결)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2006.1.16.>,<삭제 2007.5.14.>

제 66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2006.1.16.>

제 66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신설 1991.4.15.>,<삭제 2006.1.16.>

제 67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신설 1981.10.20.>,<개정 1991.4.15.>

제 68조 (운영세칙)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1991.4.15.>,<삭제 2008.2.18.>

제69조 (재심위원회 설치)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0조 (재심위원회 구성) 삭제 <신설 1981.10.20.>,<개정 1991.4.15.>,<삭제 1991.10.30.>

제71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2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3조 (심사의 범위) 삭제<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4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5조 (재심청구의 취하)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6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7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삭제 <신설 1981.10.2.>,<삭제 1991.10.30.>

제78조 (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79조 (재심결정의 효력)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80조 (위원수당) 삭제<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81조 (재심위원회의 간사등) 삭제 <신설1981.10.20.>,<삭제 1991.10.30.>

제82조 (운영세칙) 삭제 <신설 1981.10.20.>,<삭제 1991.10.30.>

제4절 사무직원

제 8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때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2006.7.26.>

제 84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이 법인이 경영하는 서강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신설1977.11.24.>,<개정 1981.10.20., 1984.11.10., 1989.5.13., 1991.4.15.>

제 85 조 (복무 및 정년) 일반직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되 정년에 관하여는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84.11.10.>

제 86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84.11.10., 1986.9.22.>

제 87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91.4.15., 1991.10.30.>

제7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9 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부장이상으로 보하거나, 외부전문직능인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92.8.10., 1997.4.14., 2002.5.8., 2006.7.26.>

제 89조의 2(남양주캠퍼스 추진조직) ① 남양주캠퍼스 개교시까지 남양주캠퍼스 사업 추진, 행정지원 등 남양주 캠퍼스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 캠퍼스 설립기획단을 둔다.

②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

③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설립기획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3.7.19.>,<개정 2013.10.11.>

제 2 절 대 학 교

제 90 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대외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외부총장은 전문직능인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교학부총장은 학사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외부총장은 대외전략업무(발전기금 모금, 홍보)와 연구 및 산학협력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신설 1981.10.20.>,<개정 1984.11.10.,1985.1.17.,1985.3.8., 1991.4.15., 2003.10.1., 2009.7.10., 2009.10.9., 2013.3.22., 2013.7.19.>

제 91 조 (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신설 1981.10.20.>

제 92 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문화처, 기획처, 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대외교류처를 둔다.

② 교무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 학생문화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교류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거나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

③ 각 처에는 필요한 팀(실)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84.11.10., 1985.1.17., 1986.9.22., 1989.5.13., 1990.3.14., 1991.4.15., 1991.6.17., 1994.3.17., 1995.6.29., 1997.2.6., 1997.11.8., 1998.3.1., 1999.10.12., 2002.5.8., 2003.8.12., 2003.10.1., 2004.6.21., 2005.7.13., 2005.11.3., 2006.3.20., 2006.7.26., 2009.7.10., 2009.10.9., 2012.9.10., 2013.3.22.>

제92조의 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신설 2004.4.8.>

제 93 조 (대학원등의 하부조직) ① 학부, 대학원 등의 하부조직에 필요한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학부, 대학원 등의 하부 조직의 학장 및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1.10.20.>, <개정 1991.4.15., 1994.1.7., 1997.2.6., 1999.10.12., 2002.5.8., 2003.8.12., 2006.7.26., 2009.10.9.>

제 94 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국제문화교육원의 원장은 전문직능인으로, 기숙사의 학사장은 교목교수로 각각 보할 수 있다.

③ 각 연구원 및 연구소, 연수원, 기타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부속시설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7.11.24.>, <개정 1981.10.20., 1984.11.10., 2009.10.9., 2014.2.17.>

제 95 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관장, 부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부관장은 전문직능인인 부장 이상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사서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1.10.20.>, <개정 1984.11.10., 2002.1.11., 2002.5.8., 2003.4.15., 200

3.8.12., 2006.7.26.>

제95조의 2(정보통신원) ① 정보통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정보통신원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8.12.>, <개정 2006.7.26.>

제 3 절 정 원

제 96조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급별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77.11.24.>,<개정 1981.10.20., 1982.4.21., 1983.4.21., 1984.11.10., 1986.9.22., 1989.5.13., 1990.3.14., 1991.4.15., 1992.5.15., 1994.3.17., 1997.4.14., 2002.6.4., 2008.11.25., 2010.12.13.>

(별표 1)

법인일반직원정원

| | |
|-------------|-----|
| 총 계 | 23명 |
| <u>일반직계</u> | 23명 |
| 2급 (참 여) | |
| 3급 (부참여) | |
| 4급 (참 사) | |
| 5급 (부참사) | |
| 6급 (주 사) | |
| 7급 (부주사) | |
| 8급 (서 기) | |
| 9급 (부서기) | |

(별표 2)

학교일반직원정원

| | |
|-------------|------|
| 총 계 | 276명 |
| <u>일반직계</u> | 139명 |
| 2급 (참 여) | |

3급 (부참여)
4급 (참 사)
5급 (부참사)
6급 (주 사)
7급 (부주사)
8급 (서 기)
9급 (부서기)

기술직계

65명

2급 (사서참여)
3급 (사서부참여)
4급 (사서참사)
5급 (사서부참사)
(실 험 기사)
6급 (사 서)
(실험 기 사)
7급 (부 사 서)
(실험 기 사)
8급 (사 서 보)
(실험기사보)
9급 (사 서 보)
(실험기사보)

기능직계

72명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제 8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97조(대학평의위원회 설치) ①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5.14.>

제98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2명

② 평의원회의 조직, 임원추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의원회의 별도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 각 단위의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14.>

제99조(대학평의원의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 구성단위에서 선출된 평의원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5.14.>, <개정 2008.2.18.>

제100조(대학평의원회의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 한다.<신설 2007.5.14.>, <개정 2008.2.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1조(대학평의원의 자격 조건) ① 평의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아래 각호와 같다. <신설 2007.5.14.>

1. 건학이념 구현의지가 있는 자.
2. 학교발전에 공헌 실적이 있는 자. (공적조서 첨부)
3. 지역사회의 평판도가 좋은 자.

제102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임명 또는 선출되는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5.14.>, <개정 2008.2.18.>

제103조(대학평의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

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되었을 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평의원회 구성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을 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되어 임시 의장을 선출 할 때.

⑥ 의장의 직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회의 소집(회의 7일 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

2. 의장 직무대행자 지명

3. 평의원회의 업무 통리 <신설 2007.5.14.>, <2008.2.18.>

제104조(대학평의원회 회의소집) ① 평의원회는 의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학교의 장의 요구 또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 구성 후 최초 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회의 연간 회의 총 일 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07.5.14.>, <개정 2008.2.18.>

제105조(대학평의원회의 의결) ①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평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의결된 사항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07.5.14.>, <개정 2008.2.18.>

제106조(대학평의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① 평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15일 이내에 평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사항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4.>

제107조(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임무) 평의원회 구성원의 임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구성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구성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07.5.14.>

제108조(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 등)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의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4.>

제109조(대학평의원운영규정) 평의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5.14.>

제 9 장 보 칙

제 11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개정 1981.10.20.>, <개정 2007.5.14.>, 2012.9.10.>

제 11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10.20., 2007.5.14.>

제 11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기 | 주 소 |
|-----|-------------|--------------|----|---------------------------|
| 이사장 | 테오돌 캅펠트 | 1904. 3. 18. | 4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120의 24번지 |
| 이 사 | 캔네스 엔월 길로런 | 1919. 5. 30. | 2년 | ” |
| 이 사 | 진 성 만 | 1915. 8. 27. | 4년 | ” |
| 이 사 | 김 태 관 | 1919. 3. 15. | 4년 | ” |
| 이 사 | 아더 에프 데쓰레프스 | 1925. 5. 27. | 2년 | ” |
| 감 사 | 백 한 성 | 1899. 6. 15. | 2년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
| 감 사 | 전 창 기 | 1917. 3. 7. | 1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0번지 |

113조(출연자의 정관 기재) 사립학교법 제10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 3에 의거 출연자의 정관 기재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금액의 10% 이상 출연한 자<신설 2007.5.14.>

114조(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설립 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07.5.14.>

| 성명 | 생년월일 | 출연재산내역 | 평가기준 | 평가금액 | 출연의사 |
|----|------|--------|------|------|------|
| | | | | | |
| | | | | | |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의 10% 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07.5.14.>

| 성명 | 생년월일 | 출연재산내역 | 평가기준 | 평가금액 | 출연의사 |
|----|------|--------|------|------|------|
| | | | | | |
| | | | | | |

부 칙

- 1956년 11월 26일 (문교부장관 인가일) 제정 (대학설립인가)
- 1964년 4월 16일 (문교부장관 인가일) (제 1 차 개정)
- 1968년 7월 8일 (문교부장관 인가일) (제 2 차 개정)
- 1969년 12월 27일 (문교부장관 인가일) (제 3 차 개정) - (종합대학승격)
- 1975년 10월 25일 (문교부장관 인가일) (제 4 차 개정)

<신설 2007.5.14.>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7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면직된다.
- ③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 이 정관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신규채용은 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978년 6월 13일 (관할청장 인가일) (제 6 차 개정)
- 1980년 3월 1일 (관할청장 인가일) (제 7 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차 개정)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 ⑤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차 개정)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차 개정)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차 개정)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2차 개정)
다만, 45조 제 2항 및 제 3항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강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3차 개정)
다만, 45조 제 2 항 및 제 3 항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강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차 개정)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6차 개정)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강대학교의 총장 및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8차 개정)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정관 시행

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1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2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3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5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6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7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8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9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0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1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2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3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6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7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8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9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0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41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3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5차 개정)
- ② (교원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1.12.31.까지 임용되어 2002.1.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동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정관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7년
 3. 조 교 수 4년
 4. 전임강사 2년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8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5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1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52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53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6일 시행한다. (제54차 개정)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교원(총장을 포함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중인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5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5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8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0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1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2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63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4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5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6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67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68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69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0차 개정)

부 칙

1-0-1 ~ 34 학교법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1차 개정)